재단법인 희현장학회 **정 관**

2020. 03. 12.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를 “재단법인 희현장학회”라 칭한다.(이하 법인이라 부른다.)

제2조(목적) 법인은 전주신흥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및 졸업생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고 교육문화향상에 이바지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였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법인의 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92-5에 둔다.

제4조(사업) ①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학력・체육・문화예술분야 등 우수학생 선발 장학금지급
2.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장학관련 회보발간 및 출판홍보사업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업

②제①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은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하여야 하며,
이때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법인은 전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가 받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자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전주신흥학교동문회 및 산하 동문회 또는 회원이 장학기금으로 출연한 금액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을 의결한 재산
5.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전조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①항 및②항의 경우를 재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조달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구분) ①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①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②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등)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①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25인 이내
2. 감사 2인 이내

②제①항 제1조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초의 이사의 임기는 제37조 내용과 같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전주신흥학교총동문회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 16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①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24조(사무국) 이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써 정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전항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신흥학교총동문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 귀속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전주신흥학교 총동문회보나 모교신문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결산 공고
3.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임 기	보기
이사장	장방원	1947.09.03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40 남양황실ⓐ1동 804	2003.02.19- 2007.02.08	4년
이 사	진정수	1934.01.15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15-2 효자성원맨션 가202	2003.02.19- 2007.02.08	4년
	신일균	1942.01.20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2가 9-5 신일균신경외과	2003.02.19- 2007.02.08	4년
	전두억	1950.02.12	전주시 완산구 효자1가 롯데@ 7동 1105호	2003.02.19- 2005.02.08	4년
	유한길	1943.01.01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289-5 흥건삼천2차ⓐ201/1001	2001.02.09- 2005.02.08	4년
	강인규	1946.06.15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88 신흥고등학교	2003.02.19- 2007.02.08	4년
	김준회	1946.08.11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신일ⓐ101/101	2003.02.19- 2007.02.08	4년
	김용기	1955.03.14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현대ⓐ201/902	2001.02.09- 2005.02.08	4년
	박재하	1949.05.09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342	2001.02.09- 2005.02.08	4년
	조하영	1959.06.25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럭키ⓐ105/1504	2001.02.09- 2005.02.08	4년
	강현희	1948.06.09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40-5	2003.02.19- 2007.02.08	4년
	노석만	1951.02.12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신일ⓐ105/207	2003.02.19- 2007.02.08	4년
	도병룡	1956.11.05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우성ⓐ112/1405	2003.02.19- 2007.02.08	4년
	이종화	1959.09.18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605 현대ⓐ	2001.02.09- 2005.02.08	4년
감 사	강봉근	1950.04.0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35-23	2003.02.19- 2005.02.08	2년
	김한근	1963.01.13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아중현대ⓐ116/1102	2003.02.19- 2004.02.08	1년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998년 12월 현재)

1. 기본재산 총괄표

(금액단위 : 원)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건	200,000,000	저축예금 및 정기예금
합 계	1건	20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금액단위 : 원)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현 금					200,000,000	
계					200,000,000	

(별지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금액단위 : 원)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건	640,000,000	
합 계	1건	640,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금액단위 : 원)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현 금					640,000,000	
계					640,000,000	